

전주온빛초등학교 제2021-3호

공 고

「전주온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전주온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
전주온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사항

1. 개정 이유

-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방식 변경
- 초·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반영
-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내용을 반영

2. 주요 내용

-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간접선출에서 직접선출 방식으로 변경
-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,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거 진행
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
- 연간 회의 개최 횟수 변경 등

3. 의견 제출

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**2021년 2월 16일(화) 16:00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온빛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 : 전주온빛초등학교 행정실

- 주소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7(우편번호 54864)
- 전화 : 063-249-6610
- 팩스 : 063-211-1244

제출양식

개정안	검토의견		비고
	수정안	수정이유	

4. 기타

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

가. 신.구조문 대비표 1부.

나. 전주온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1부.